

# 과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7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및 운영방법 정비로 위원회의 안정성과 신뢰감을 극대화 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6조제1항)
- 지역주민 대표 20인이내(시의원을 포함한다) (안 제6조제3항제1호)
  - 환경·도시분야의 전문가 10인이내(안 제6조제3항제2호)
  - 관계공무원 10인이내 (안 제6조제3항제3호)
- 나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(안 제6조제4항)
- 다.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안 제6조제5항)

##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등심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지역주민대표 20인이내(시의원을 포함한다)
2. 환경, 도시분야의 전문가 10인이내
3. 관계공무원 10인이내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실 · 과 · 소	도 시 과
입 안 자	도 시 과 장	우 범 찬
	도시계획담당	정 원 모
	담 당 자	윤주영(4701)

## 신 · 구조 대비표

현 행	개 정 ( 안 )
<p>제6조 (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</p> <p>1. 지역주민 대표 3인 이내(시의원을 포함한다)</p> <p>2. 환경, 도시분야의 전문가 3인 이내</p> <p>3. 관계공무원 3인 이내</p> <p>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</p> <p>④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</p>	<p>제6조 (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지역주민 대표 20인 이내(시의원을 포함한다)</p> <p>2. 환경, 도시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</p> <p>3. 관계공무원 10인 이내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

#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 조례중개정조례안

## □ 개정이유

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및 운영방법 정비로 위원회의 안정성과 신뢰감을 극대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가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(안 제6조제1항)

○ 지역주민 대표 20인 이내(시의원 포함한다)

(안 제6조제3항제1호)

○ 환경·도시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(안 제6조제3항제2호)

○ 관계공무원 10인 이내(안 제6조제3항제3항)

나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6조제4항)

다.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안 제6조제5항)

## □ 검토내용

< 개정취지 및 내용 >

- 동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,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준 농림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시설중 식품접객업, 숙박업,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조례로써

- 허용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준 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 심의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- 개정 취지는 당 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민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심의 위원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의 여건,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심의에 임하게되는 등 폐단을 개선하여 당해지역 의원을 비롯한 주민의 참여로 소수 위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하려는 것임.
- 개정 내용은 당초 시 위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표 3인 이내, 환경·도시분야의 전문가 3인 이내, 관계공무원 3인 이내,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10인 이내로 규정하였으나
- 시의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20인 이내, 환경·도시분야 전문가 10인 이내, 관계공무원 10인 이내 등 50인 이내로 구성하고
- 위원회의 운영을 매회의 마다 9인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려는 내용임.

#### < 타당성 검토 >

- 동 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에서 시·군의 조례로 설치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
- 내용면에서는 동 조례의 심의위원회는 지역 개발과 도시계획 등 전문화된 인사로 정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총 정원제의 형태로 50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라는 취지에 반한다할 것이며
- 특히 관계공무원 수를 단지 10인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는 매회의시 제적 위원의 과반수를 넘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어 민원처리의 집행자인 공무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못될 뿐아니라 민간자문 기구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사료됩니다.